



## 동아대학교 · 농촌진흥청 간 학술 · 연구 교류에 관한 협약서



농촌진흥청

동아대학교와 농촌진흥청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학·연 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교류 및 양성이 우리나라 농업·농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, 이 분야의 인적·물적 협력 및 학술·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양 기관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교류 및 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해 미래 농업·농촌에 필요한 인력양성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협력 범위)** 양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학생인재양성 및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, 장비 및 전문가의 공동 활용
2. 겸임교수 및 현장명예연구원 운영
3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 사항

**제3조(시설과 장비의 공동 활용)** 양 기관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양 기관의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학술정보교류 및 공동연구)** 양 기관은 학술과 기술정보 교류에 상호 협력하며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
제5조(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6조(기밀유지) 양 기관의 연구협력과 인력교류 등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7조(효력발생 및 유효기간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
제8조(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)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기관은 변경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서 보관) 양 기관의 장은 위 합의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,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9월 26 일



동아대학교

한석정

총장 한석정

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(하단동)



농촌진흥청

라승용

청장 라승용

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